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3
----------	-----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2023년 10월 16일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문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북 도내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위해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등 선도·교육·조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학기별 1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 피해·가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문 분리 및 이에 따른 문구 정리 (안 제6조)
- 교육감의 가해학생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및 학교장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을 위한 사전 조치 지원 사항 신설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 이유

-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도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난 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는 2,537건이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학교폭력도 1,536건으로 집계되고 가운데, 이 같은 수치도 피해 신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교사 등의

중재로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10건 중 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상정된 사안도 올 8월 기준 526건에 달하는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학교 밖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발생 관련 현황 >

학년도	신고접수건수	학교장 자체해결건수	심의위원회건수
2020	1,444	844	600
2021	2,398	1,559	839
2022	2,537	1,615	922
2023.8	1,536	1,010	526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관련 심의 자료를 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장이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이와 함께, 기존 조례의 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를 제6조(피해 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과 제7조(가해 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으로 분리해, 각 조문별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조문 분리로 신설된 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학교장이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과 법령을 포함한 적극적인 교육적 사전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 교육적 해결 역량 회복과 학교의 선제적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책무)제5항에는 충북 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장이 학기별로 1회씩 실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¹¹⁾ 정기보고회에 제출된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 관련 심의 자료(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기존 조례 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라는 이질적인 목적과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제16조(피해학생 보호)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관련 조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이라는 단일 조항에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6조(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과 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으로 분리해, 각 조문별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여기에 제6조제2호의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치유기관 확충 및 지원’으로 변경해,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전문 치료 및 재활 치유기관 확대¹²⁾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신설한 안 제7조(가해 학생 도·교육·조치 등 지원) 중 제1항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4.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23년 303곳 → ‘24년 400곳) 및 유관기관 연계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병의원 협약·위탁,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 확대, 고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전문 심리·의료 지원 강화

개발하는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

- 이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문제행동 학생 대응’ 방안에도 정책비전과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문제행동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활동 보호의 적극적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

< 충북교육청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23.9.20) >

② 문제행동 학생 대응

정책비전 : 다양한 선제적 조치로 문제행동 예방

- | | |
|----|-----------------------------|
| 세부 | · (신규)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 |
| 추진 | · (신규) 문제행동 학생 지도 대응체계 구축 |
| 과제 | · (신규) 문제행동 학생 교육적 분리 조치 |

- 이와 함께,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을 위해서 관계법령 및 지침과 학칙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과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3월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 기본방향 >

- ◆ 일방·지속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 ◆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 도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선제적 조치 노력 등을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기관 확충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해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라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기본방향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방·지속적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적용하지만, ‘학교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본적 해결’ 의 실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반성문 작성 등 교육적 사전 조치의 추진을 규정한 부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에 대한 의견 접수 검토 및 조치 결과

- 조례안 예고기간: 2023년 10월 6일 ~ 11일
- 의견접수: 총 1건
- 의견접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출자	현행 조례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조례안 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 임의예고 기간 지역 교육지원청 의견조회 후 취합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 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 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 생의 보호·치유, 가해학 생의 선도·교육 등 필요 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제3조(책무) ①~④(현행과 같음) <신설> ⑤ 교육장은 학기별 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 부도의회 해당 상임위원 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른 행정 사무처리 상황의 질의응답 요구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 ○ 개정안 제3조제5항은 지 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 회의 권한 외에 교육장에	○ 반영 ○ 본 개정안 신설 조항은 지역별 학교폭력 처리 상황 과 유형 등의 현황을 정기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취 지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 원회는 서류제출 요구 권

	<p>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개 지방의회 해당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음.</p> <p>○ 현행법령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이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방의회 의장은 교육장에 개 해당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p> <p>○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u>‘삭제’</u> 의견을 제시함.</p>	<p>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보고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p>
--	---	--	--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16. / 박병천 의원

○ 수정이유

- 안 제3조제5항은 교육장이 학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대한 정기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조치로 취지는 충분하나,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정내용

- 제3조제5항을 삭제함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육장은 학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피해·가해학생 지원)”을 “(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을 “치유기관 확충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보호”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을 위해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라 다음 방법의 사전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2.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
-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기관 확대
 3. 가해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① ~ ④ (생 략) <u><신 설></u></p>	<p>제3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교육장은 학기별로 1회씩 개최 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u></p>
<p>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u>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u>지원</u> 3. (생 략) 4. 그 밖에 피해학생 <u>보호와 가해학생 조치</u>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u><신 설></u></p>	<p>제6조(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 -----<u>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치유 기관 확충 및 지원</u> 3. (현행과 같음) 4. ----- <u>보호</u>----- ----- <p>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 ①<u>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을 위해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u></p>

에 따라 다음 방법의 사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2.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

③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기관 확대
3. 가해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 제13조 (생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 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

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개정 조례안에 따라 제6조(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 제7조(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 관련 사업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3조(책무) ① ~ ④ (생략)	제3조(책무) ① ~ ④ (생략)	제3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교육장은 학기별로 1회 씩 개최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 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 북도의회 해당 상임위 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u>	<u><삭제></u>